

7월 세무일지

10 (월)	원천징수세액신고 납부기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권거래세신고 납부기한
18 (화)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중소기업)
18 (화)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1 (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기한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법인)
	주택 건물분 재산세 납부기한(7. 16 ~)
	주세(교육세포함) 특별소비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납부기한(7. 1 ~ 7. 31)

♣ 세금을 못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의 율(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5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행정규제

☞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국규제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의 제한을 요구합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